# UNDER STAND AVENUE ART STAND 대관 규약

#### 1. 목적

본 규약은 언더스탠드에비뉴(UNDER STAND AVENUE)가 운영하는 아트스탠드(ART STAND)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리

- 아트스탠드는 언더스탠드에비뉴 내의 연주회, 연극, 무용 등 공연과 전시, 행사 개최, 방송촬영 등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아트스탠드 공간: 약 205.7m<sup>2</sup> (이동형 좌석 최대 120석)
  - 아트스탠드 이동형 무대: (1.83m × 2.44m × H 0.6m ~ 0.8m) × 10EA
-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 정의 대관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대관의 범위는 아트스탠드의 기본 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 3. 대관의 종류

-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기본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연습, 철수)으로 구분한다.
  - 기본대관: 공연, 전시, 강연, 행사 및 방송 등의 실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
  - 준비대관: 기본대관에 부수하는 것으로써 무대나 작품의 설치 등 사전작업과 사용 후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사용 전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대관
-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일정에 대해서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수시대관은 위의 정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 시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4. 대관신청

-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제1호서식), 공연(행사) 계획서(제2호서식) 또는 전시 계획서(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처 : E-mail | art@understandavenue.com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 4길 21 예원빌딩 4층
-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설비사용신청서(제4호서식)를 시작일 14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정기대관 공고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대관 공고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관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 한다.

#### 5. 대관승인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

지(서면)해야 한다.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신청인은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6. 사용시간

○ 아트스탠드의 대관시간은 대관규약 제7조의 <표1>과 <표2>의 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언더스 탠드에비뉴와의 협의에 따라 대관자가 원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단, 23시 이후 대관을 희망할 경우 추가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 7. 대관료 산정 및 감면기준

○ 대관료는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부과한다.

<표1. 공연, 행사 및 방송 대관료 산정표>

구분	시간	공연	행사 및 방송
기본대관	12:30~22:30 (1일 10시간)	1,000,000 원	2,000,000 원
준비대관	09:30~12:30 (1일 3시간)	250,000 원	500,000 원
	12:30~22:30 (1일 10시간)	500,000원	1,000,000원

<표2. 전시 대관료 산정표>

구분	대관 가능 시간	전시	비고
기본대관	09:00~22:00	2,400,000 원	7일 기준(월요일 포함), 1일 10시간
준비대관	09:00~22:00	200,000원	1일 10시간

- 상기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불포함한 금액이며, 대관료 납부 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본대관료 포함내역은 다음과 같다.
  - 무대 및 객석, 대기실, 창고 등 공통시설 및 공간 사용료
  - 부대설비(음향, 조명, 영상 설비) 사용료 (시작일 14일전까지 부대설비사용신청서 제출 필수)
- 전시대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중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1일 10시간을 대관 기준시간 으로 한다. (예: 10:00~20:00 / 12:00~22:00)
- 전시대관의 경우 7일(월요일 포함) 대관을 기본단위로 하며, 7일 대관 중 준비대관 1일에 대한 비용은 언 더스탠드에비뉴가 지원한다.

- 전시대관의 경우 7일 미만으로 대관할시 기본대관료는 일일 400,000원, 준비대관료는 일일 200,000원으로 산정한다.
- 공연, 행사 및 방송에 대한 오전 준비대관(09:30~12:30)은 준비대관료의 50%를 대관료로 부과한다.
- 저녁 공연, 행사 및 방송 대관은 22:30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철수작업은 23:00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초과 시 대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대관료를 부과한다.
- 대관료의 감면 기준 및 감면율은 대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 8. 대관 계약금 및 잔금납부

-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의 30% (수시대관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 예정일 30일전(수시대관의 경우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잔금 정산 후 발생한 시설의 추가 사용료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월요일 제외) 공연 및 전시 등이 진행되지 않은 날도 계약기 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9. 대관료 반환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100%)
  - 언더스탠드에비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100%)

#### 10. 대관취소 및 중지, 신청자격제한

-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대관승인 후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승인 없이 대관내용을 변경할 경우
  -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아트스탠드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이 규약을 위반할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 단체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한 경우
  -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 사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대관자가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 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 아트스탠드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공연,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정책에 반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일 경우

## 11.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12. 대관내용 변경 금지 및 대관취소

- 모든 공연, 전시 및 행사 내용(제목, 참여자, 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관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일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13.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대관자는 아트스탠드의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언더스탠드에 비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완료 후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단,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철거할 경우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대관자는 진행내용과 관련 없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 14.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아트스탠드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대관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대관자의 대관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언더스탠드에비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언더스탠드에비뉴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대관자가 아트스탠드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특효 등을 사용할 시「전기사업법」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관자 측에서 부담한다.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대관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관자는 아트스탠드 부속설비(열쇠, 대기실집기, 비품 등) 파손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하다.
- 대관자는 아트스탠드에 화환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화분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연, 전시 및 행사 종료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5. 광고 홍보물 혐의

- 대관자는 진행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아트스탠드에 관련된 사항은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아트스탠드 내외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다.

## 16. 방송중계 및 부대행사

- 아트스탠드에서 행해지는 공연 및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사전에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녹화 또는 방송일지라도 규모에 따라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 부대행사(리셉션, 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공연 및 전시 등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공연 및 전시 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

#### 17.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18. 규약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9.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대관운영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 20. 관합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언더스탠드에비뉴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대관신청서 서식 1부.

제2호 서식 공연(행사) 계획서 1부.

제3호 서식 전시 계획서 1부.

제4호 서식 부대설비사용신청서 1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